

## 【 5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10. 20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최초로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4항)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구성 등)①~③(생략)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u>다만,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u>  <u>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u>          ⑤(생략)</p>	<p>제17조(구성 등)①~③(현행과 같음)          ④-----          -----&lt;삭제&gt;          ⑤(현행과 같음)</p>

·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 ·

취급 정보통신망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 ☎ (031)249 - 2871 / FAX (031)249 - 2228  
 법무당당관실 당당관 박정오 사무관 조규윤 담당자 유용철

<http://www.provin.kyonggi.kr>

문서번호 법무 11250-1481

시행일자 2000.09.25 ( 5년 )

공개여부  공개

받 음 양주군수

참 조 거활감사실장

선령	도수 6/15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 9. 25 14:00	결 재
	번호	4156	상 장
처 리 과		공 급	
당 당 자		3,500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조례안 검토의견 회신

1. 양주 가감 11250-1481 (2000-9-14)호의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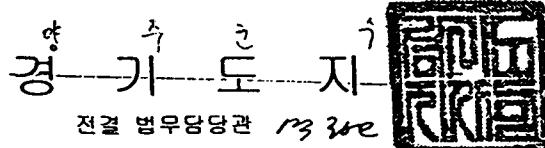
2. 양주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하나 해당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요구조항 : 조례안 제17조제4항 단서

나. 개정요구이유 및 개정방향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규정한 바 주민자치센터는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8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중에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장을 호선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로 위촉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됨

○ 따라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도에서 기 시달한 표준안과 같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요망 끝.



1-1

"희망의 새천년 - 새롭게! 더 힘차게!"

관인생략  
양 주 군

우 482-709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산 7-1 /☎ (031) 820-2056 / 전송 (031) 820-2059  
기획감사실 / 실장 송증섭 / 기획법무담당 황규철 / 담당자 박현실

문서번호 기감 11250-174

시행일자 2000. 9. 28. (3년)

수신 총무과장

참조

설 함	리정	278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 9. 28.	결 재	2000. 9. 28.
	번호		· 공 람	
처 리 과	총무과			
담 당 자	2000. 9. 28.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조례안 검토의견 회신 통보

- 법무11250-10890(2000.9.25)호와 관련입니다.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 회신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조례 개정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개정요구조항 : 조례안 제17조제4항 단서
  - 개정요구이유 및 개정방향
    -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장을 「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규정한 바 주민자치센터는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8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중에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장을 호선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로 위촉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됨
    - 따라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도에서 기 시달한 표준안과 같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개정 요망. 끝.

양 주 군 수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양 주 군  
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0년 9월 25일

양주군 조례 제 160 호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 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 라 함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읍·면별 명칭은 당해 읍·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별 특성·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읍·면장은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부담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회비 등(이하 “경비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경비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③경비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운영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읍 · 면장은 당해 읍 · 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 · 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특히 여성위원이 100분의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 · 면장은 위원회의 요구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 · 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당해 읍 · 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 결정이 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 ·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최초로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4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 검토의견 회신(경기도 법무 11250-10890, 2000. 9.25)
- 종전조례(전문)